

건강과학 종합연구소 규정

(제정 1995. 4.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건강과학 종합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과학 및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강과학 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 과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조사
2. 학술 강연회와 연구 발표회 및 강좌의 개최 및 지원
3. 연구 자료의 확보 및 연구 논문집의 발간
4. 위탁된 연구 조사, 감정 및 분석 시험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기구

제5조(구성) ① 연구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건강과학에 관련된 본교 전임교원과 연구소 소속 연구소교수로 한다.
- ③ 타 연구소의 정회원으로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본교 교원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④ 연구소는 본교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특별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 1인
2. 간 사 : 1인
3. 운영위원 : 5인 이상 10인 이내
4. 연구요원 및 연구지원 인력 : 약간명
5. 감 사 : 1인

제7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 정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간사) ①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총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요원) ① 연구요원은 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조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소는 전임연구원과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원을 지칭하며, 연구소교수와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구분한다.

2. 전임연구원은 본교 인사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전임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은 연구소장의 감독을 받는다.

4. 비전임연구원은 전임연구원이 아닌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을 지칭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활동 및 용역 등 연구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 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연구기간 동안 임용한다.

제10조(연구지원인력) ① 연구소에 연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지원 인력은 연구소 행정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운영하는 일반직원과 조교 등을 지칭한다.

제11조(기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 논문 편집위원회, 공동기기실 운영위원회, 연구분과, 전문연구소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간사, 논문편집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평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공동기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원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논문편집위원회

제15조(논문 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 연구논문 발간을 위하여 논문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논문편집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 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논문편집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논문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논문편집 위원회 임무) 논문편집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논문집의 투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 논문 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 논문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업적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 5 장 감 사

제17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해당 연구소의 예산집행, 기자재 구매, 사업 진행내용 등 연구소가 1년 동안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해 조사·평가를 한다.

③ 감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한다. <개정 2019.9.1.>

⑤ 감사는 임무 완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정지된다.

제 6 장 공동기기실

제18조(공동기기실) 공동기기실은 국고 또는 교비 중에서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한 공동 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연구소장이 공동기기실장을 겸임한다.

제19조(공동기기실 운영) ① 공동기기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기기실 운영세칙을 따로 정한다.

② 공동기기실은 공동기기를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기기실은 기기 사용자에게 기기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기기실의 기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연구분과 및 전문연구소

제20조(연구분과)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대체의학 연구분과
2. 생물자원 연구분과
3. 환경보건 연구분과
4. 기초과학 연구분과
5. 체력증진 연구분과
6. 식품과학 연구분과

제21조(연구분과 활동) 연구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1개 이상의 연구분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연구분과는 분과활동을 위하여 분과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소) ① 전문연구소는 본교 부설연구소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② 전문연구소는 연구분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③ 전문연구소는 독자적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2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학교 지원금
2. 소속 연구원의 연구비 수탁에 의해 발생하는 연구간접경비
3. 외부 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4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